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۲۷

제출년월일 : 2001. 12.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현행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함(안 제23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이첩시달(경북도 총무12100-11861, 2001. 10. 19) 사본 1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① <생 약></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u>60일</u>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③ ~ ⑩ <생 약></p>	<p>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u>90일</u></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관인생략

“위대한 경복 함께 뛰는 300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2574 /FAX (053)950-2380
총무과 과장 석현하 사무관 김승태 담당자 전병기

문서번호 총무12100-11861

시행일자 2001. 10. 19 (1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발 음 시장 · 군수

참 조 총무과장

선 령	과장	777777	지 시	11.12.26기 4주차 마감 청탁금지법
접 수	일자 시간	2001.10.19	결 재	승인 777777
	번호	4370		
	처理과	3-3-4	· 공 람	
	담당자	이동현		
심사자		심사일		

제 6 장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이철시 달

1. 행정자치부 운영12100-800(2001.9.26)호의 이첨입니다.
 2.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60일→90일)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이첨시달하니 이 표준안에 의거 해당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포예정 보고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물 일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표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1.11.1부터 시행한다.

※ 2001.11.1 이후 조례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경우의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u>60일</u> 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 ----- <u>90일</u> 의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부칙 보완내용

(행정자치부 문영12100-800; 2001. 9. 26 관련)
(경상북도 총무 2001-1186, 2001. 10. 19)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1년 11월 1일 이후 조례개정시에는 "2001년 11월 1일로부터"를 "2001년 11월 1일부터"로 함

(2)(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